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및 과도한 권리 제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함으로써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사항을 승인받도록 수정

○ 조례안 제10조(삭제)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 제10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허가 사용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삭제

○ 조례안 제14조

-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라 허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9조제4호는 2001. 01. 18일자 개정으로 삭제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위임”을 “징수를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u></p> <p>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u></p> <p>3.·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0조(보험가입) ① <u>군수는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p> <p>제14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u></p> <p>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② <u>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p>

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징수의 위임) ① (생략)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 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년액으로 납부한다.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징수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탁-----.

③ -----

-----징수를 위탁-----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경제체육과장 한 왕 기
연 락 처	(033)330-2540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